

2022년 여주소방서 공무원채용 공고

경기도 여주소방서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여 주소 방 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명	직군/직종	담당사무	채용인원	비고
여주소방서	가직군 / 영양사	식단작성, 식품검수, 위생관리 등	1	

2.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

□ 공통기준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2022.12.31.기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前일 (2022.08.02.)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

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前일(2022.08.02.)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원채용 등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기타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자격조건 및 우대조건

직 종	자격조건	우대요건
영양사 (1명)	<p>○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자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증 소지자의 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¹⁾ 영양사 근무경력자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응시 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67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법 제40조(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고용조건

가. 신 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나. 근무시작일 : 2022. 9. 1.(목)

다.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분 야	근무부서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영양사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1명	식단작성, 식품검수, 위생관리 등

라. 근무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월~금요일/ 주5일 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마. 보수 및 복무 : 「경기도 공무원등 운영 규정」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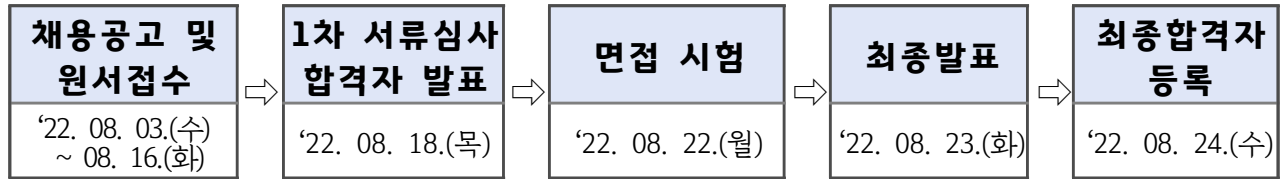
- 무기계약근로자 ‘가’직군 해당호봉의 봉급표 ※ 『별표1』 참조
-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주12시간 이내)

바. 기 타

- 명절휴가비 : 봉급의 75% × 연 2회(설, 추석)
-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 채용절차 및 세부일정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	추진일정	장 소	소요기간
채용공고	2022. 08. 03.(수) ~ 08. 16.(화)	홈페이지 [여주소방서, 워크넷등]	14일
원서접수	2022. 08. 03.(수) ~ 08. 16.(화)	경기도 여주소방서	14일
1차 서류심사	2022. 08. 17.(수)	경기도 여주소방서	1일
1차 합격자 발표	2022. 08. 18.(목) 10:00	개별통보	1일
면접 시험	2022. 08. 22.(월)	경기도 여주소방서	1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08. 23.(화) 14:00	개별통보, 홈페이지[여주소방서]	1일
근로계약서 체결	2022. 08. 24.(수)	경기도 여주소방서	1일

가.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 문자 등 개별통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08. 03. ~ 08. 16. 18시 한 (상시접수)

나. 접 수 처 :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및 등기우편접수, e-mail 접수(zezezo@gg.go.kr)

- 전자우편(zezezo@gg.go.kr) 접수 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접수처	우 편 주 소	전 화 번 호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우) 12625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110 여주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공무원 채용담당자	031)887-7213

라. 응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공 통	1. 응시원서 <별지 1호> 2. 이력서 <별지 2호> 3. 자기소개서 <별지 3호> 4.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4호>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5호> 6.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7. 주민등록초본(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부 8. 영양사 면허증(사본) 및 조리사 면허증(사본) 1부 9.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1부	
우대서류	1.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붙임1 제출서류 양식’에 있는 <별지 6호>경력증명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 제출 / 별도 서식 불인정 2. 사무관련(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사본) 1부	

6.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접수인원 3배수 미만일 경우 3배수 내 선발)
- ▶ 경력사항 접수 및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경력(30점) / 공통		자격증 가점(최대 10점)	
경력 기간	배점	· 사무관련 자격증 개당 : 5점	
10년 이상	30점		
8년 이상 ~ 10년 미만	25점		
6년 이상 ~ 8년 미만	20점		
		(준)고령자 가점(최대 10점)	
4년 이상 ~ 6년 미만	15점	나 이	배점
3년 이상 ~ 4년 미만	10점	고령자	10점
3년 미만	5점	준고령자	5점
경력 없음	0점	해당없음	0점
		· 준고령자(50세~55세 미만), 고령자(55세 이상)	

※ 1차 서류심사 동점자 결정방법 : 2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심사항목

- ▶ 제출서류 종류(미비, 미 첨부), 채용자격조건, 우대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

※ 결격사유, 채용관련서류가 미비·미첨 및 허위·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평정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 절대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평가결과 : 미공개

○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 심사위원별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예정인원의 1배 별도선발
 - ※ 면접합격자가 임용될 수 없을 때 추가 합격처리

※ 등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다수 보유자
3.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나. 채용후보자 등록

○ 대 상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후보자 등록 전 확인사항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부적합 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취소

○ 내 용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

7. 응시 제출서류

가. 항목별 주의사항

○ 면허증 및 자격증

- 면허증 및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 원서접수 前 일(2022. 8. 2.)
 - ※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자격)증 취득일 기준
-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前 일(2022. 8. 2.)**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
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별지 6호> 경력증명서 서식을 활용
 -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경력증빙자료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7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함께 제출
 -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2022. 8. 3.)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전입 일자가 확인 가능해야 함

나.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활용)

* 응시 제출서류(공통서류,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887-7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2022년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표 1부. 끝.

[붙임 1]

<별지1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응시기관명		
응시직종		
주 소		
전자우편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여주소방서장 귀하



응시표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응시기관명	
성 명	(한글)	생년월일			
2022년 월 일 여주소방서장 (직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여주소방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그 외 공란은 모두 작성
2. 응시기관명 : 여주소방서
3.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체크함(■)
[예 : 영양관리사, 조리사, 사무보조, 청소원, 청소원(장애인)]
4.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사진파일로 칼라 프린트해도 무방(흑백 불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여주소방서에서 시행하는 2022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요건 해당사항 및 제출 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여주소방서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 2012.12.22.	상근	
				(예시)	2010.12.25. ~ 2012.12.22.	비상근 주20시간	
				(예시)	2010.12.25. ~ 2012.12.22.	시간제 주10시간	
	총 근무기간						
	집단급식소 해당유무		(유), (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여주소방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031-770-0212)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연도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00병원	2017	주임	2017.5.1.~2019.4.1. (2년 11월)	조리사

입증인(1)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1)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폐업사실증명서 1부.

2022년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봉급표

호봉	가직군
1호봉	2,166,080
2호봉	2,166,080
3호봉	2,166,170
4호봉	2,175,050
5호봉	2,183,530
6호봉	2,193,360
7호봉	2,203,240
8호봉	2,213,150
9호봉	2,223,110
10호봉	2,233,110
11호봉	2,242,270
12호봉	2,251,460
13호봉	2,260,700
14호봉	2,269,960
15호봉	2,278,120
16호봉	2,286,320
17호봉	2,294,560
18호봉	2,302,810
19호봉	2,311,110
20호봉	2,319,430
21호봉	2,326,860
22호봉	2,334,300
23호봉	2,341,770
24호봉	2,349,280
25호봉	2,356,790
26호봉	2,363,390
27호봉	2,370,000
28호봉	2,376,650
29호봉	2,381,170
30호봉	2,385,690
31호봉	2,390,220

* 8시간 근로자 기준이며 6시간 근로자는 봉급의 75% 지급

* 가직군 : 영양관리사, 조리사, 사무보조, 청소원